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유기홍·김철민·서동용

송재호 · 이병훈 · 이정문

이형석 · 인재근 · 조승래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치원, 어린이집 및 초·중·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권고하였음.

이에 유치원, 어린이집 및 초·중·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6항제1호부터제3호까지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"10미터"를 각각 "30미터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	6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	
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	
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	
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	
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	
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	
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정한다.	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	1
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	<u>3</u>
<u>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	0미터
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	
된 구역을 말한다)	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	2
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	
터 <u>1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	<u>30미터</u>
공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	
공된 구역을 말한다)	

<u><신 설></u>	3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
	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
	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
	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
	된 구역을 말한다)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